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2호 2026. 3. 3. (화)

고시 · 공고

- 2026년 목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2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지적재조사 조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목포시 하수도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24조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또는 타공사, 타행위에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일

목 포 시 장

1.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목포시 하수도 조례 제22조에서 제24조

2. 부과대상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한 타공사 및 타행위 자

3.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법

- 오수발생(증가)량(㎥/일)에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단, 타행위의 경우 목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한다.

4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995,300원/㎥

- 산정근거 : 목포시 하수도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별표4>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의함.

5. 시행일 : 2026년 3월 3일 ~ 변경 고시일까지 시행한다.

※ 기타 문의사항 : 목포시 하수과(☎ 061-270-8519)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2025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 ②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3. 3. ~ 2026. 3. 23.(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23일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2),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3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이의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3.

목 포 시 장

1. 공고대상 : 7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3. 3. ~ 2026. 3. 17. (14일간)
3. 공고장소 : 목포시 시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목포시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고지(이의신청인)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36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붙임]

지적재조사 조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용당3지구 이의신청)

번호					징수액	소유자		반송사유	독촉기한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용당동	970-460	대	191.6	6,080,900	박*태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번길 *	폐문부재	2026.2.27.
2	용당동	962-76	대	137.9	7,819,870	이*주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2026.2.27.
3	용당동	927-31	대	198.8	15,687,000	오*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번길 *, ***호	폐문부재	2026.2.27.
4	용당동	962-35	대	115.9	19,583,200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	폐문부재	2026.2.27.
5	용당동	967-345	대	172.4	3,067,300	김*영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2026.2.27.
6	용당동	967-442	대	150	2,618,000	아*신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	폐문부재	2026.2.27.
7	용당동	967-378	대	166.6	59,472,200	박*자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번길 **-*	폐문부재	2026.2.27.